2020 장애인 교육 표준 재검토

발제문(Discussion Paper)

# 서론

본 문서는 호주 정부의 2020년 장애인 교육 표준 재검토 공청회를 앞두고2005년 작성된 장애인 교육 표준 (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에 대한 재검토 발제문입니다. 본 발제문에는 장애인 교육 표준의 역할과 목적, 2020년 재검토의 목적, 그전 재검토에서 제기된 내용들, 의견 제출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과 경험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될 토론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 제도 이용과 참여는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기회를 극대화시키며, 그러한 **긍정적 교육 경험은 개인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진학과 고용기회 등 보람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ABS(호주통계청)에서 실시한 장애·노인·보호자 설문조사(SDAC)에 따르면, 호주 인구0~4세 중 4%, 5~19세 중 10%, 15~64세 중 13%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43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호주 인구 17.7% 가 장애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NCCD(Nationally Consistent Collection of Data on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y)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호주 전역의 **학교 학생 5명 중 1명 (19.9%) 정도**가 장애로 조정을 받은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 장애인 교육 표준의 역할

**장애인 교육 표준**(**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이하 **‘**표준’)은 2005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반에서 교육제도 이용과 참여**를 보장받도록 돕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이하 DDA)의 하위입법으로, 이는 차별금지법 아래 속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근거로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DDA는 교육을 포함한 국민 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차별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합니다.

DDA 제2 장 제 2절 (Part 2 Division 2)에 의거 **법무장관**은 장애인의 동등한 제도 이용과 기회 보장에 관해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들을**DDA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화하는** **장애인 표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DDA에 의거 작성된 장애인 표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표준(Disability Standards for Accessible Public Transport 2002)
* 장애인 교육 표준(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2005)
* 장애인 (시설 이용 -건물) 표준 (Disability (Access to Premises-Buildings) Standards 2010).

표준에 따른다는 것은 즉, DDA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 운영자는 반드시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 장애인 교육 표준 의 목적

표준의 목적은 DDA에서 명시된 교육제공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DDA이 표방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표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등록**
* **참여**
* **교육과정 개발**
* **인증 및 학습 전달 방식**
* **학생 지원 서비스**
* **괴롭힘과 피해 방지 대책**

표준의 각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직업훈련 에 대한 **장애학생**(예비 학생 포함)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권리** 추구
* **교육기관 운영자의** **법적 의무 또는 책임**
* 표준 각 항목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들에 대한 **준수 척도**

이 표준에서 말하는 교육기관 운영자란, 유아원, 유치원, 공립 및 사립 학교, TAFE, 기타 직업교육 및 훈련 (VET), 평생교육 기관 운영자, 고등 교육기관 운영자를 말합니다.

## 합리적인 조정의 의무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반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할 의무**가 교육기관 운영자에게 있다는 것을 표준은 명시합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조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기관 운영자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학생, 가족 또는 보호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게될 직원들, 다른 학생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고, 교과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성과 학업평가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본 표준은 또한 교육기관 운영자가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 괴롭힘이나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는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만 신고

만약 교육기관 운영자가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에는, 호주 인권 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에 장애인 차별에 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AHRC는 화해 과정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AHRC가 화해에 실패할 경우, 호주 연방법원 또는 연방 순회법원에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2010년 및 2015년 재검토

2010년 재검토에서는 본 표준이 교육제도의 이용과 참여를 촉진하는 좋은 기본 틀이긴 하지만, 표준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몇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5년 재검토에서는, 2010년 재검토 이후 표준의 접근성과 이용면에서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 장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 및 2015년 표준 재검토에서 확인된 주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 향상** – 표준이 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널리 홍보되고, 관람이 용이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작업들이 요구된다.
* **명확성, 이해력 및 역량** – '합리적인 조정' 이나 '부당한 어려움'처럼 용어들의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다양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들의 모범적인 교육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지침이 필요하다.
* **불만 신고** – 협상 및 중재 과정 등 불만 신고 체계의 접근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학생과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 **책무성(accountability) 및 표준 준수** – 표준 준수를 불만 신고 체계에만 의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체계로 보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2020년 재검토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들이 확인될 경우, 2015년 이후 실시된 장애학생 지원 개혁 등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중대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5년 재검토 후 일부 권고사항들이 명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어떤 권고 사항들이 이번 재검토에서도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이미 대체되었는지를 고려해서 살펴 볼 것입니다.

# 2020년 표준 재검토

**연방 교육부 장관**은 법무장관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표준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검토는 표준이 아래 열거된 목적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a)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최대한 근절한다.*

*(b) 교육 및 직업훈련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다른 일원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동등한 장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c)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른 일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지역사회가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촉진한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는 표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 2020년 재검토 범위와 초점

표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학생 및 가족, 보호자, 교육기관 운영자, 교사, 교육자, 옹호자들의 경험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 정부, 교육 당국, 국가 기관과 표준 기관, 비정부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얻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이 교육 및 직업훈련 제공에 대한 DDA의 의도를 해석하는 도구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2020년 재검토에 위임된 사항들

표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재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1. 표준(및 표준 지침서)에 명시된 **권리, 의무, 준수 척도**가 **명확하고 적절한가요**?
2. 학생, 가족, 보호자, 교육자, 교육기관 운영자 및 정책 입안자들은 본 표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 의무, 준수 척도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준수하고 있습니까**?
3. 표준 제정 후 15년간, 본 **표준은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반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습니까**?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표준이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들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도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권고안 작성에 있어, 본 재검토는 교사와 교육자들의 지식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등 **관할기관과 정부기관 간에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고, **표준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도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재검토 범위

그동안 많은 재검토와 조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최선의 교육방법에 대한 토론들이 폭넓게 이루어져 왔으며, 왕립 감사위원회(왕립 장애 감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탐구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교육,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급의 존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기금같은 사안들에 대해 강한 견해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안들 중 일부는 본 재검토 범위 밖에 속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재검토의 핵심 질문은**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얻는데 본 표준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등 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재검토에 참여하는 방법

**표준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환영합니다**. 현재 교육 제도에 있는 젊은이들부터 장애인들을 지지하는 분들까지 –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저희가 귀하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준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들, 그들의 가족, 보호자들의 경험들**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공청회는 2020년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더 많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날짜가 확정되는 데로 웹 사이트([Review website](http://www.disabilitystandardsreview.education.gov.au/))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웹 사이트를 통해 서면, 동영상 혹은 음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설문지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폭넓은 참여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공청회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COVID-19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특정 단체들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공청회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Review website](http://www.disabilitystandardsreview.education.gov.au/))를 방문하거나, 새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받아 보기 원하는 분은 여기 ([sign up](https://www.education.gov.au/2020-review-disability-standards-education)) 에 클릭해서 등록해 주세요.

#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재검토에 제공할 의견들을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질문들입니다.

의견 제출, 설문지 작성이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 재검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들은 단지 표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귀하의 견해와 경험을 이해하고자 만든 지침일 뿐입니다.

의견을 보내실때, 본인의 신분(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육자(교사, 강사 및 평가자 포함), 옹호자, 교육기관 운영자, 기타 등등) 을 알려주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 분야 (유아원, 학교, 직업훈련원, 대학교 등)도 표기해 주세요.

##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질문

**교육제도 이용과 참여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말해 주세요.**

* 등록 및 이용: 교육제도 이용시 어떤 경험들을 했나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과정들은 어떠했고 결과에 만족했나요?
* 참여: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자가 합리적인 조정들을 해 주었나요? 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나, 교육과정 및 시설사용 등에 대한 조정이 이에 포함됩니다. 교육기관 운영자와의 상담은 어떠했나요? 결과에 만족했나요?
* 학생 지원: 교육 과정동안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적절히 지원을 받았나요? 전문 인력 및 자원 등의 이용기회도 이에 포함됩니다.
* 괴롭힘이나 피해사례: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교육 환경에서 괴롭힘이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제해결을 위해 귀하/가해자의 교육기관 운영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표준 준수: 담당 교육기관 운영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불만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나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 진로: 한 교육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면서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예: 학교에서 추가교육 기관으로의 전환).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교육 제도를 이용하고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 특정 사례: 장애학생이 교육제도를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기타 다른 상황들 (예: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전환 상태, 출신국가 또는 인종, 다른 문화와 언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눠주세요.
* COVID 19: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교육에 참여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영향을 미쳤나요? 자연재해와 같은 다른 주요 사건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요?

**표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표준과 표준의 취지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어디서 표준에 대한 정보를 얻었나요?
* 교육제도의 이용과 참여에 대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알고 있나요 ?
*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표준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반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을 이용하고 참여하도록 표준이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호주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을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표준이 도움이 되었나요? 이유를 말해 주세요.

본 재검토는 표준의 개선여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표준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 이용과 참여에 있어 장애학생들에게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나요? 이러한 장벽 제거를 위해 표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 표준 개선이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왜 개선되어야 하는지 나눠주세요.
*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려면 무엇이 시행되어야 할까요?
* 더 많은 혹은 다른 지원 자료가 있으면 표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표준 지침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유용한가요? 유용하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들을 더 잘 지원하려면 표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 교육자 및 교육기관 운영자를 위한 질문

장애학생들과의 **경험에 대해 말해 주세요.**

* 등록 및 이용: 장애학생들이 교육제도를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나요?
* 참여: 모든 장애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귀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과정 및 프로그램 참여나, 교육과정 및 시설사용 등에 대한 조정이 이에 포함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상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조정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학생 지원: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어떻게 적절히 지원해 주었나요? 학생이 전문 인력 및 자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 괴롭힘이나 피해사례: 귀하의 장애학생들 중 괴롭힘이나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나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표준 준수: 학생이나 부모, 혹은 보호자로부터 귀하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요?
* 진로: 장애학생이 한 교육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도록 지원해 준 경험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예: 학교에서 추가교육 기관으로의 전환).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들을 지원한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들이 교육 제도를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학생과 가족, 보호자와의 상담은 어떻게 했나요?
* 특정 사례: 장애학생이 교육제도를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기타 다른 상황들 (예: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전환 상태, 출신국가 또는 인종, 다른 문화와 언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장애학생들 중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귀하는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나눠 주세요.
* COVID 19: 귀하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영향을 미쳤나요? 자연재해와 같은 다른 주요 사건들로 인해 학생들이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요?

**표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표준과 표준의 취지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디서 표준에 대한 정보를 얻었나요?
* 표준에 대한 교육을 받았나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죠?
* 장애학생의 교육 제도 참여와 이용에 대한 귀하의 의무를 이해하나요? 귀하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 표준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협상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나요?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할지 여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반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을 이용하고 참여하도록 표준이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호주 원주민이나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기반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을 이용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표준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주세요.

본 재검토는 표준의 개선여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표준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장애학생들의 교육 참여나 이용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극복하려면 표준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 표준 개선이 필요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할지 의견을 말해주세요.
*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려면 무엇이 시행되어야 할까요?
* 표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더 많은 다른 지원들이 필요하나요? 어떤 지원들이 유용할까요?
* 표준 지침서는 유용한가요? 유용하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학생과 가족, 보호자를 더 잘 지원하려면 어떤 표준 개선이 필요할까요?

# 영유아교육과 보육 표준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표준은 현재 유아원(preschool)과 유치원(kindergarten)에는 적용되지만, 어린이집(childcare)은 제외됩니다.

2010년과 2015년 재검토에서 모두 영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 대한 기대와 책임, 그리고 표준이 적용되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 사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로의 확장 적용을 두번의 재검토는 권고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관계자들은 표준을 어린이집까지 적용했을 경우 예상되는 영향과 효과를 고려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표준의 확장 적용이 DDA가 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번 재검토와 공청회에서도 기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볼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에 대한 표준 및 DDA 확장 적용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별도의 발제문이** 8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 접근성(Accessibility)

장애인들이 본 재검토에 참여하여 그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문서 작성, 수화 통역사 및 캡션 등 을 지원할 것이며, 자료들을 사전에 제공하여 공청회에서 다룰 정보들과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참여 방법도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이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 기간과 시간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청회에서 모인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재검토에 기여하시는 귀하의 의견은 현 표준이 명시한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표준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 하고 있거나, 특정 영역에 개선의 필요가 확인되면, 변경해야 할 사항, 변경 방법, 변경 시기 등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작성할 것입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긴밀히 합력하여 최종 보고서와 관련 보고서 권고사항들을 작성하겠습니다. 본 재검토가 의도하는 바는, 호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비정부 교육기관 운영자 간에 국가적 차원의 협력 활동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검토 보고서는 2020년 12월에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2021년 초 모든 정부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 참여 방법

재검토 웹 사이트([Review website](http://www.disabilitystandardsreview.education.gov.au/))를 통해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발제문에 실린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서면, 동영상 혹은 음성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 분량제한은 3000자이하입니다.

온라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래 주소로 인쇄본을 제출해 주세요.

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Review Team

Disability Strategy Taskforce

GPO Box 9880

Canberra City ACT 2601

## 문의처

본 문서를 포함한 재검토에 관련한 문의는 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교육, 기술 및 고용부 ) [DisabilityStrategy@dese.gov.au](mailto:DisabilityStrategy@dese.gov.au)로 문의 바랍니다.

webinar 등록, 설문지 작성, 혹은 공청회 참여 문의는 The Social Deck [engage@thesocialdeck.com](mailto:engage@thesocialdeck.com)으로 문의 바랍니다.